

부속서 8-라-1

한국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 수평적 양허			
CPC(유엔 잠정 중앙상품분류: 통계문서시리즈 M No. 77, 국제 경제사회국, 유엔통계사무소, 뉴욕, 1991) 코드 번호 위의 별표(*)는 이 양허표상의 해당 서비스 하위 분야가 주어진 CPC 코드 번호에 따라 분류된 서비스 하위 분야의 일부 또는 일부들만을 포함하는 것을 표시한다. “약속 안함*”이란 기술적 실현가능성의 부족으로 약속하지 않음을 말한다.			
이 양허표에 포함된 모든 분야	3) 걸프협력회의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에너지 및 항공 등의 분야에서 기존 국내 기업의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음. 새롭게 민영화된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제한될 수 있음.	3) 토지 취득은 다음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i)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기업으로 간주되지 않는 기업의 토지취득은 허용됨. 그리고 (ii)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기업으로 간주되는 기업과 외국기업 지점의 토지 취득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조건으로 하여 다음의 정당한 사업 목적으로 허용됨. • 정상적인 사업활동 과정 중 서비스 공급에 사용되는 토지 • 해당 법령상 기업 고위임원의 주거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또는 • 해당 법령에 규정된 토지 보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세제 혜택을 포함한 보조금에 대한 자격은 해당 법에 따라 한국에 설립된 기업으로 제한될 수 있음. 연구개발 보조금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으로 취급되는 거주자는 한국 주식에 포트폴리오 투자 시 내국민 대우를 부여받음.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제

4) 자연인의 주제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4) 아래와 같이 정의된 자연인의 입국 및 일시 체류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외에는 약속 안 함. A. 기업 내 전근자(ICT) 한국에 설립된 자회사, 지사 또는 지정된 계열사를 통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의 피고용인이며 입국 신청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그 기업에 고용된 자로서 다음 중 하나인 자연인: (i) 임원 - 조직 내에서 주로 조직의 경영을 지휘하고, 의사결정에 있어 넓은 재량을 행사하며, 그 회사의 고위급 임원, 이사회 또는 주주로부터 일반적인 감독 또는 지휘만을 받는 자. 임원은 그 조직의 서비스의 실제 공급과 관련된 임무는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않음. (ii) 고위관리자 - 조직 내에서 주로 조직 또는 그 조직의 부서를 지휘하고, 그 밖의 감독직, 전문직 또는 관리직 피고용인의 업무를 감독하고 통제하며, 채용 및 해고 권한이나 채용, 해고 또는 그 밖의 인사 조치를 권고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일상적 업무에 대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자. 고위관리자는 감독을 받는 피고용인이 전문직이 아닌 한 제일선의 감독자는 포함하지 않으며, 주로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피고용인도 포함하지 않음.	4) 기업 내 전근자(ICT), 상용 방문자(BV), 서비스 판매자(SS)에 관한 조치를 제외하고는 약속 안 함. 계약 서비스 공급자(CSS)에 대해서는 약속 안 함. 토지취득은 토지 임차권 허용 외에는 약속 안 함. 세제 혜택을 포함한 보조금에 대한 자격은 해당 법에 따른 거주자로 제한될 수 있음.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ii) 전문가 - 조직 내에서 지속적인 전문성을 지닌 고급 지식과 조직의 서비스, 연구 장비, 기술 또는 경영에 대하여 재산권적 지식을 보유하는 인. A에 정의된 자연인의 입국 및 체류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 제한되며, 신청인이 위 조건을 여전히 충족하는 경우 체류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다음의 정의는 투명성 목적으로 규정한다. i) 자회사는 그 회사의 모회사가 총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한 기업, 회사 또는 그 밖의 법적 실체로 정의함. ii) 지점은 동일한 조직의 운영부서 또는 대표사무소로 정의하고, 그 운영부서 또는 대표사무소는 걸프협력회의 영역에 소재한 모회사를 대표할 포괄적 권한을 가진 피고용인을 보유함. iii) 지정된 계열사는 동일한 모회사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두 개의 자회사 중 하나, 또는 파트너십, 회사 또는 그 밖의 법적 실체의 파트너로 두 법적 실체 각각의 총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두 실체 각각의 총 투자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책임을 지는 동일한 주주단체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두 개의 법적 실체 중 하나로 정의함.			
	B. 상용 방문자(BV) 걸프협력회의 회원국들 서비스 공급자의 한국 내에서의 상업적 주재 설립의 책임이 있는 자연인으로서, 한국 내에 서비스 공급자의 대표사무소, 지점 또는 자회사가 없고 그 자연인은 직접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적인 판매 또는 서비스 공급에 종사하지 않음. C. 서비스 판매자(SS) 한국 영역에 기반을 두지 않고 한국 내에 소재한 소득원으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는 자연인으로서, 서비스 공급자의 서비스 판매가 일반 공중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 자연인이 그 서비스 공급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판매를 교섭할 목적으로 그 서비스 공급자를 대표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자연인. B와 C에 정의된 자연인의 입국 및 체류는 90일의 기간으로 제한됨. D. 계약 서비스 공급자(CSS) – 법인의 피고용인 다음의 조건과 분야별 구체적 파트에 언급된 모든 추가 조건의 적용을 받는, 한국에 상업적 주재가 없는 법인의 피고용인으로서 계약된 서비스의 공급에 종사하는 자연인.¹ 그 법인은 공급되는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인, 한국에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서비스 계약을 취득해야 함. 그 계약은 한국의 법과 규정을 준수함. 입국하려는 자연인은 입국허가 신청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그 법인의 피고용인이어야 할 것임. 그 자연인은 한국의 법, 규정 또는 요건에 따		

¹ “D” 유형에 따라 이루어진 수평적 또는 구체적 약속은 이 장에 따라 한국의 고용시장에 접근하려는 자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영구적인 차원에 서의 고용에 관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않음.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라, 그리고 워싱턴 어코드, EMF 국제 등록 전문 엔지니어 및 APEC 엔지니어와 같은 관련 국제기구의 인정에 따라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학문적, 전문적 자격 및 전문적 자격을 갖춘 능력에 기반한 경험을 보유해야 함. 그 자연인은 한국에 소재한 법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도록 요구됨. 약속은 특정 하위 분야에 달리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적 제한(적용 양식 및 수준은 추후 결정함)의 적용을 조건으로 할 수 있음. 계약은 한국의 전문직 직함을 사용할 권한을 부여함이 없이, 다음의 서비스 공급 활동 또는 하위 분야에서 체결될 것이 요구됨. - 걸프협력회의 회원국들에 소재한 자연인을 고용하고 있는 법인으로부터 장비 또는 기계를 구입하는 한국의 법인을 위한, 건설 및 발전 장비 외의 산업 장비 또는 기계의 설치, 관리 또는 수리와 관련된 서비스 - 정보기술, 전자상거래, 생명공학, 나노기술, 디지털 전자공학 및 환경 산업에 적용되는 자연과학에 관한 기술적 지식 또는 기술과 관련된 자문 서비스 - 한국의 회계법인 또는 회원 계약을 통한 사무소에 대한, 외국 회계 기준 및 감사, 공인 회계사 연수, 감사 기법 전수, 그리고 회계, 감사 및 부기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의 교환을 위한 자문 서비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 공동계약의 형태로 한국의 법에 따라 등록된 건축사와의 협업을 조건으로 하는 건축 서비스 - 경영 컨설팅 서비스 다음 서비스 분야의 전문 엔지니어 -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와 관련된 자문 서비스 -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기반 이행 서비스 - 자료 관리 서비스 - 자료 시스템 서비스 - 자동차에 대한 특수 엔지니어링 설계 서비스 D에 정의된 자연인의 입국 및 체류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계약 기간으로 제한됨.		
투명성 목적을 위한 주석 1. 입국과 일시 체류가 허가된 자연인은 「출입국관리법」과 노동법을 준수함. 2. 자연인의 일시적 이동에 관한 한국의 약속은 노사분규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I. 분야별 구체적 약속			
1. <u>사업 서비스</u> A. <u>전문직 서비스</u> a. 법률 서비스 (CPC 861*) 서비스 공급자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관할지역에 관한 법 및 국제공법에 대한 자문 서비스로서 다음을 제외함. (i) 법원 및 그 밖의 정부기관에서의 사법 절차 또는 법적 절차를 위한 대리 및 그러한 절차를 위한 법률 문서의 준비 (ii) 공증 증서의 준비 위탁을 위한 법적 대리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대표사무소 형태로만 가능. 한국의 변호사 자격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현지 변호사와의 제휴 또는 그 변호사의 고용은 허용되지 않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상업적 주재가 요구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법자문사는 1년에 최소 18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할 것이 요구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i) 국제상사중재에서의 대리는 허용됨. 다만, 중재에서 적용 가능한 절차법과 실체법이 외국법자문사가 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법이어야 함. (ii) 회사 이름의 사용은 허용됨. 다만, 한글로 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라는 명칭과 함께 사용되어야 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ii) 노동 분야 자문서비스 또는 한국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식재산권, 광업권 또는 한국의 정부기관에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는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나 상실 또는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사건에 관한 행위, 그리고 (iv) 한국 국민이 당사자이거나, 관련된 재산이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의 가족관계 또는 상속에 관한 법률 사건에 관한 행위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제

4) 자연인의 주제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 주식 다음 정보는 투명성 목적으로만 규정함. i) 한국에서 외국법자문사로서 활동하고자 하는 외국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동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관할국에서 최소 3년 동안 법률실무에 종사했어야 하며, 그 관할국의 법조계에서 유효하고 적정하게 종사하고 있어야 함. ii) 한국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함. 동 대표사무소는 법무부장관이 승인한 외국법자문사 1명 이상으로 구성됨. 동 대표사무소는 신용과 전문성을 보유해야 하며,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어야 함. 대표사무소의 대표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관할국에서 쌓은 3년의 경력을 포함하여 최소 7년 동안 법률실무에 종사했어야 함. iii) 대표사무소는 이윤추구행위를 할 수 있음. 다만, 한국 내에서의 그러한 주재는 적절한 사업계획과 재정기반을 유지해야 하고, 「외국법자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수해야 함. iv) 이 분야의 약속의 목적상, 걸프협력회의 회원국의 관련 법에 따라 조직되고 그 걸프협력회의 회원국에 본사를 둔 법무회사(로펌)만이 한국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음. 걸프협력회의 회원국들이 아닌 국가의 법무회사(로펌)의 지점, 현지 사무소, 자회사 또는 합작회사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어떠한 유형의 종속적 또는 의존적 법적 실체도 한국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수 없음. v) 한국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a)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법률전문가 또는 외국 법무회사(로펌)가 어떠한 유형으로라도 한국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한 자격 부여, 승인, 등록, 허용 및 감독 그리고 그 밖의 요건에 대한 제한, (b)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법률전문가 또는 외국 법무회사(로펌)가 한국 변호사, 법무회사(로펌), 법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관세사와 동업, 상사연합, 제휴 또는 법적 유형을 막론하고 그 밖의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대한 제한, (c)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법률전문가 또는 외국 법무회사(로펌)가 한국 내에서 한국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관세사를 고용하는 데 대한 제한, 그리고 (d) 외국 법자문서비스를 공급하는 법적 실체의 이사회 의장에 대한 것을 포함한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제한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제

4) 자연인의 주제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 회계, 감사 및 부기 서비스 (CPC 862)	1) 감사 서비스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2) 감사 서비스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3)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공인회계사에 의한 개인 사무소, 감사반 및 회계 법인(유한회사)만 허용됨. 감사반 및 회계 법인(유한회사)의 공인회계사만 감사서비스 공급이 허용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1)2)3) 한국 회계법인 또는 회계사무소는 연회비를 납부하고, 전 세계적인 영업망을 가지고 있는 국제회계조직의 회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한국 회계법인 또는 회계사무소에 대해서는 회원계약을 통하여 다음의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음. - 외국회계기준 및 감사에 대한 자문, 공인회계사 연수, 감사기법 전수 및 정보 교환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c. 세무 서비스 (CPC 863)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세무조정서비스 및 세무대리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2) 세무조정서비스 및 세무대리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3)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에 의한 개인사무소, 세무조정반 및 세무대리법인(유한회사)만이 허용됨. 세무조정반 및 세무대리법인(유한회사)의 세무사만 세무조정서비스 공급이 허용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인회계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공인회계사 시험 통과 후 한국에서 2년의 실무 수습을 받아야 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세무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세무사 시험 통과 후 한국에서 6개월의 실무 수습을 받아야 함.	4) 본국의 법에 따라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하고, 국제회계법인에 고용된 자연인이 상기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동하는 것은 허용됨. 이러한 인력의 입국 및 체류는 1년으로 제한되며,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연장이 가능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제

4) 자연인의 주제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d. 건축 서비스 (CPC 8671)	1) 한국 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건축사와의 공동계약을 통하여 외국 건축사에 의하여 서비스가 공급되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상업적 주제가 요구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2) 4) 한국 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건축사와의 공동계약을 통한 외국 건축사의 서비스 공급은 허용됨. 5년의 전문 경력을 이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하여 그 자격이 한국 건축사와 동등한 전문직으로 인정되는 외국 건축사 자격자는 한국에서 시행되는 인턴 개발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고도 건축사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이들은 건축사 자격 시험의 다음 두 과목에 통과함으로써 한국 건축사 자격 취득이 가능함. (a) 건축설계 I, 그리고 (b) 건축설계 II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e. 엔지니어링 서비스 (CPC 867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f.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CPC 867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g. 도시계획 및 경관건축 서비스 (CPC 867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i. 수의료 서비스 (CPC 932)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약속 안함.	
B. <u>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u>			
a.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 관련 자문 서비스 (CPC 84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 소프트웨어 시행 서비스 (CPC 84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데이터 프로세싱 서비스 (CPC 84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CPC 84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기타 (CPC 845, 84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u>연구개발 서비스</u>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a. 자연과학에 대한 연구개발 서비스 (CPC 85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해양과학조사에 대하여, 한국의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하려는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한국 기업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사전에 허가 또는 동의를 획득해야 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사회과학 및 인문학에 대한 연구개발 서비스 (CPC 85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학제 간 연구개발 서비스 (CPC 85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u>D. 부동산 서비스</u> 중개 서비스 (CPC 82203*, 82204*, 82205*, 82206*) 감정평가 서비스 (CPC 82201*, 82202*) 토지 가격 책정과 수용에 대한 보상 등 정부권한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와 관련된 감정평가 서비스는 제외함.	1) 상업적 주재가 요구됨. 2) 해외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해외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해외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해외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E. <u>운영자를 동반하지 않는</u> <u>임대/리스 서비스</u>			
a. 선박 관련 (CPC 8310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항공기 관련 (CPC 83104)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외국인 지분참여 50퍼센트 미만의 합작투자에 한정하여 허용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합작투자회사의 대표자는 한국 국민이어야 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그 밖의 운송장비 관련 (CPC 83101, 83105*) ²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관련 (CPC 83106-8310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² 83105*: CPC 83105 중 15인승 미만의 승합차에 한정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e.기타 개인 또는 가정 용품 관련 리스 또는 임대 서비스 (CPC 83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F. <u>그 밖의 사업 서비스</u> a. 광고 서비스 (CPC 871) b.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서비스 (CPC 864) c. 경영 컨설팅 서비스 (CPC 865)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d. 프로젝트 경영 서비스 (CPC 8660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성분과 순도 검사 및 분석 서비스 (CPC 86761*) ³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상업적 주재의 설립은 경제적 수요심사를 조건으로 함. 주요 심사 기준: 기존의 국내 공급자의 수 및 이들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 공중 보건, 안전 및 환경의 보호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물리적 성질 검사 및 분석 서비스 (CPC 86762)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통합 기계 및 전기 시스템 검사 및 분석 서비스 (CPC 86763*, 86769*) ⁴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³ 86761*: CPC 86761 중 대기, 수질, 소음 수준 및 진동 수준에 대한 검사, 시험 및 분석 서비스만을 포함함.

⁴ 86763*, 86769*: CPC 86763, 86769 중 전기 제품의 검사 및 분석 서비스만을 포함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기술적 진단 서비스 (CPC 8676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f. 농업 및 축산업 관련 자문 서비스 (CPC 8811*, 881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가금류 감별 서비스 (CPC 881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g. 어업 관련 자문 서비스 (CPC 88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h. 광업 부수 서비스 (CPC 88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 제조업 부수 서비스: 신제품 제조 기술 관련 자문 서비스만 포함 (CPC 884* 및 885*, 다만 88411, 88450, 88442 및 88493 제외)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k. 직업 소개 서비스 (CPC 87201*, 87202*)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에 대한 직업 소개 서비스는 제외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상법」에 따른 회사 형태로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직업소개 서비스에 대한 투명성 목적의 주석 1. 회사는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하여 결정되고 공표된 서비스 요금에 대한 규칙을 준수함. 2. 회사는 5천만원 이상의 납입자본금으로 설립됨. 공급자가 추가로 지점 사업소를 설치하려 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지점 사업소당 2천만원씩 총 납입자본금이 가산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제

4) 자연인의 주제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m. 과학 및 기술 관련 자문 서비스 지질학적, 지구물리학적 및 그 밖의 과학적 예측 서비스 (CPC 86751) 지표 밑 조사 서비스 (CPC 86752) 지표조사 서비스 (CPC 86753*) 지적 측량과 관련된 서비스는 제외함. 지도제작 서비스 (CPC 86754*) 지적도 관련 서비스는 제외함. n. 장비의 유지 및 보수 (CPC 633, 8861, 8862, 8863, 8864, 8865, 8866)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o. 빌딩 청소 서비스 (CPC 874*, 다만, 87409 제외)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p. 사진 서비스 (CPC 875)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q. 포장 서비스 (CPC 876)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r. 인쇄 (CPC 88442*) ⁵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r. 출판 (CPC 88442*) 신문 및 정기 간행물 출판 서비스는 제외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s. 국제회의 대행 서비스 (CPC 8790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속기 서비스 (CPC 8790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⁵ 88442*: CPC 88442 중 스크린 인쇄, 그래픽어 인쇄 및 인쇄 관련 서비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t. 번역 및 통역 서비스 (CPC 87905)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전문디자인 서비스 (CPC 87907)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2. <u>커뮤니케이션 서비스</u> B. <u>쿠리어 서비스</u> 특급배달 서비스⁶를 포함하는 쿠리어 서비스 (CPC 7512*) 「우편법」에 따라 한국 우정당국이 배타적 권리⁷를 가지는 서신의 수집, 처리 및 배달 서비스는 제외함.⁸	1) 서비스의 제공은 항공 및 해로운송 형태로 제한됨. 2) 제한 없음. 3) 국내 쿠리어 공급을 위한 화물운송업 면허는 경제적 수요심사를 조건으로 함.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존의 국내 쿠리어 서비스 공급자를 인수하려는 인은 피인수자가 보유한 면허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조건하에 영업을 영위하는 한, 신규 화물운송업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서비스의 제공은 항공 및 해로운송 형태로 제한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한국 우정당국의 배타적 권리는 우편망 및 그 운영에 대한 접근권을 포함함. 이 약속은 자신의 책임하에 고용하여 운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음. 이 약속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및 항공기를 보유한 쿠리어 사업자에게의 항공 운항권 부여를 포함하지 않음.			

⁶ “특급배달 서비스”란 신속성을 기반으로 하는 문서, 인쇄물, 소포, 상품 또는 그 밖의 품목의 수집, 운송 및 배달로서, 서비스 공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그 품목을 추적하고 그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⁷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a) 군복무자 또는 이와 동등한 신분을 지닌 자가 우체국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공급하는 것, 그리고

(b)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그 부에 속할 수 있는 차량 정수를 결정하고 우체국에 그 차량을 배정하는 것

⁸ 그러나 「우편법 시행령」 제3조는 민간 쿼리어 사업자가 다음을 포함한 상업서류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함. a) 화물에 첨부한 봉하지 않은 서류 또는 송장, b) 무역 관련 서류, c) 외국 자본 또는 기술 관련 서류, 그리고 d) 외국환 또는 그 관련 서류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C. <u>통신 서비스</u>			
a. 음성전화 서비스	1) 모든 서비스 공급은 허가받은 한국 서비스 공급자와의 상업적 약정을 조건으로 함.	1) 제한 없음.	
b. 패킷교환 데이터 전송 서비스	2)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c. 회선교환 데이터 전송 서비스	3) 기간통신사업 허가 또는 별정통신사업을 위한 등록은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한정하여 부여됨.	3) 제한 없음.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제

4) 자연인의 주제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부가 서비스 ¹¹ h. 전자메일 i. 음성메일 j. 온라인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검색 k. 전자적 데이터 교환 l. 저장 및 전송, 저장 및 검색을 포함한 고도/부가 팩시밀리 서비스 m. 코드 및 프로토콜 변환 n. 온라인 정보 및/또는 데이터 처리(거래 처리 포함) o. 기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및 원격 컴퓨팅 서비스 ¹²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부가 서비스 공급자에게 데이터 전송 서비스의 공급이 허용됨. ¹³

¹¹ “부가 서비스”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임차한 통신망설비를 통하여 제공되며, 이용자의 정보를 저장하여 전송하거나 처리하여 전송하는 통신 서비스를 말함.

¹²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및 원격 컴퓨팅 서비스는 제3자 통신을 매개하는 통신 서비스를 포함하지 않음.

¹³ 이용자의 데이터를 형태 또는 내용의 변경 없이 전송 및/또는 교환하는 통신 서비스(음성전화, 텔렉스, 팩시밀리 서비스 그리고 전용회선의 단순 재판매는 제외).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제

4) 자연인의 주제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D. <u>시청각 서비스</u> a. 영화 및 비디오테이프 제작 및 배급 서비스 (CPC 96112*, 96113*) 케이블 TV 방송 서비스는 제외함. e. 음반 제작 및 배급 서비스(녹음)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3. <u>건설 서비스</u> (CPC 511-518)	1) CPC 5111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CPC 5111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4. <u>유통 서비스</u> ¹⁴ A. <u>위탁 중개인 서비스</u> (CPC 621, 다만, 62111, 62112 및 선물계약의 위탁 중개인 서비스는 제외)	1) 의약품 및 의료상품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¹⁴ 다음 서비스는 제외함.

(a) 총포, 도검 및 화약류 거래

(b) 예술품 및 골동품, 그리고

(c) 다음의 개설 및 운영과 다음에서의 유통 서비스

(i) 지방 당국이 공영도매시장으로 공식 지정한 농축수산물 공영도매시장

(ii)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생산자 단체 또는 공익법인이 개설 및 운영하는 농수산물 공판장, 그리고

(iii)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축산업협동조합이 개설 및 운영하는 가축시장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 WTO 관세율할당의 운영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 또는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 <u>도매 서비스</u> (CPC 622*, 다만, 62211 중 곡물 도매업, 62223, 62229 중 인삼, 홍삼 및 곡분 도매업, 그리고 62276 중 비료 도매업은 제외)	1) 의약품, 의료상품, 기능성 식품 및 공급형태 3상 제한 대상인 품목에 대해서는 약속 안 함. 2) 제한 없음. 3) 다음의 서비스는 경제적 수요심사를 조건으로 함. - 중고자동차 도매업 - 가스 연료 및 관련 제품 도매업 주요 기준: 합리적인 가격의 형성, 수급 균형을 위한 기존 공급자의 수와 이들에 미치는 영향,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질서 있는 상행위. 또한 인구밀도, 교통, 환경오염, 지역적 조건 및 그 밖의 지역적 특징과 공공의 이익 주류 도매 유통업을 하는 인은 관련 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함.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입된 지정 한약재의 도매유통에 대한 수급조절을 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C. <u>소매 서비스</u> [CPC 61112, 61130, 61210, 613*(LPG 관련 소매거래 및 주유소 사업 제외), 631*(63108, 쌀, 인삼 및 홍삼 제외), 632]	1) 의약품, 의료상품, 기능성 식품 및 공급형태 3상 제한 대상인 품목에 대해서는 약속 안 함. 2) 제한 없음. 3) 중고자동차 및 가스 연료에 대한 소매 서비스는 경제적 수요심사를 조건으로 함. 주요 기준: 기존 국내 공급자의 수와 이들에 미치는 영향, 인구밀도, 교통, 환경오염, 지역적 조건 및 그 밖의 지역적 특징과 공공의 이익. 전화 또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주류 판매는 금지됨. 안경사(안경사 또는 검안사) 면허를 받은 자연인으로서 한국에 사무소를 개설한 자만이 안경사 또는 검안 영업에 종사할 수 있음. 면허를 받은 안경사(안경사 또는 검안사)만이 영업을 위한 영업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안경사 1인당 1개의 영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음. 의약품 소매유통 서비스(한약재 유통 포함)를 공급하는 인은 약국을 1개소만 설치할 수 있으며, 회사의 형태로 설립할 수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D. <u>프랜차이징</u> (CPC 8929*) ¹⁵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주석 다음의 설명은 소매 서비스에 적용됨. 일반 공중에 대한 의약품의 직접 공급(약국)은 공중 보건 보호를 위하여 허가받은 약사에 의해서만 허용됨.			

¹⁵ 프랜차이징 서비스는 이 양허표의 도매 서비스 및 소매 서비스 분야에서 허용된 품목으로 한정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5. <u>교육 서비스</u>¹⁶ C. <u>고등교육 서비스</u>¹⁷ (CPC 923*) 학위 수여를 목적으로 정부 또는 공인평가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립고등교육기관에 의하여 제공되는 고등교육 서비스. 다음은 제외함. (i) 보건 및 의료 관련 고등교육 (ii) 유아·초등·중등 교육원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 (iii) 법학전문대학원, 그리고 (iv) 방송통신 대학 및 사이버 대학	1) 약속 안함. 2) 그 밖의 국내외 고등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 그러한 인정된 학점이 졸업에 필요한 총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됨. 3)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학교법인¹⁸만이 장관의 인가를 받아 교육기관 설립이 가능함(사내대학은 학교법인 설립이 불필요). – 첨부 1에 기재된 교육기관의 형태만 가능함. – 고등교육기관의 신설, 확장 또는 이전은 수도권 지역¹⁹에서 제한될 수 있음.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¹⁶ 모든 서비스 공급형태를 통한 시장접근 및 내국민 대우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은 한국에서의 전문직 활동을 위한 입학, 등록 및 자격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학위의 인정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음.

¹⁷ 고등교육기관의 형태는 고등교육서비스에 관한 첨부 1에 기재됨.

¹⁸ “학교법인”이란 교육관계법령에 따라 정규 교육기관을 설립할 목적으로만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을 말함.

¹⁹ “수도권 지역”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말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대학(전문대학)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에서의 전문대학, 대학 및 산업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은 외국 공인평가 인정기구의 인정을 취득하거나, 해당 외국 정부의 인정 또는 추천을 획득한 외국 대학으로 제한됨. － 그 밖의 국내외 고등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 그러한 인정된 학점이 졸업에 필요한 총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됨. － 교육부장관은 각 교육기관의 학생 수를 제한할 수 있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제

4) 자연인의 주제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첨부 1(고등교육 서비스) 고등교육기관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전문대학(기능대학은 제외): 「고등교육법」에 따라 (a) 2년부터 3년까지의 교과과정을 제공하고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또는 (b)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고등교육기관 2. 대학: 「고등교육법」에 따라 4년부터 6년까지의 교과과정을 제공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고등교육기관 3. 산업대학: 「고등교육법」에 따라 산업 사회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고등교육기관 4. 기술대학: 「고등교육법」에 따라 전문인력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2년의 교과과정을 제공하고 전문학사학위 및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고등교육기관 5. 사내대학: 「평생교육법」에 따라 근로자를 교육하기 위하여 「평생교육법」에 명시된 경영자, 연합체 또는 협의체가 설치 및 운영하고,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및 학위를 수여하는 평생교육시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D. <u>성인교육 서비스</u>²⁰ (CPC 924*) 사립 성인교육기관이 제공하는 성인교육 서비스. 다음은 제외함. (i) 학력을 인정하거나, 국내외 학점, 학위 또는 졸업장을 수여하거나 이와 연계된 교육 서비스 (ii) 「고용보험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선원법」에 따라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직업훈련 서비스 (iii) 방송을 통한 교육 서비스, 그리고 (iv) 정부가 위임한 권한에 따라 기관이 제공하는 직업훈련 서비스	1) 보건 및 의료 관련 성인교육 서비스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 첨부 2에 기재된 교육기관의 형태만 허용됨. - 교육감은 학원수강료를 규율할 수 있음. - 수도권 지역과 그 주변에서 교육기관의 설립 및/또는 확장은 제한될 수 있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보건 및 의료 관련 성인교육 서비스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성인대상 학원에 강사로 고용되는 외국 국민은 학사 학위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소지자로서 한국에 거주해야 함.	

²⁰ 성인교육기관의 형태는 성인교육서비스에 관한 첨부 2에 기재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제

4) 자연인의 주제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첨부 2(성인교육 서비스) 성인교육기관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학원(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설교육기관)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10명 이상에게 평생교육 또는 직업교육과 관련된 다음의 과목에 대한 교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임. 학교, 도서관, 박물관, 직원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의 시설,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및 운전학원은 제외됨. (a) 산업기반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섬유 및 의복, 광업 자원, 국토 개발, 농업 및 임업, 해양 산업, 에너지, 공예, 환경, 운송 및 안전 관리 (b) 산업응용기술: 디자인, 이·미용 경영, 식음료, 포장, 인쇄, 사진 및 피아노 조율 (c) 컴퓨터: 컴퓨터, 게임, 로봇, 데이터 처리, 통신 기기, 인터넷 및 소프트웨어 (d) 간호 조무: 간호 조무 (e) 문화 및 관광: 출판, 영상 및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 상품 및 관광 (f) 경영 및 사무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회계,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및 속독 (g) 국제: 성인 대상 외국어, 통역 및 번역 (h) 인문사회: 대학 편입, 공공 경영, 사업 경영, 회계, 통계 및 공무원 시험 (i) 기예: 국악, 전통무용, 서예, 꽃꽂이, 꽃 기예와 공예, 만화, 연극, 모델, 화술, 실용음악, 바둑 및 옹변 2.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의 인가를 받거나, 교육부에 등록 또는 신고된 시설임. 평생교육시설은 성인을 위하여 설립된 것으로서, 사업장, 비정부기구, 학교, 언론기관, 그리고 지식 및 인력의 개발과 관련된 평생교육시설에 부설된 평생교육시설을 지칭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6. <u>환경 서비스</u>			
A. <u>폐수 서비스</u>			
폐수 처리 서비스 (CPC 9401*) ²¹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u>폐기물 처리 서비스</u>			
산업폐기물 처리 서비스 (CPC 9402*) ²²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²¹ 9401*: CPC 9401 중 산업폐수의 수집 및 처리 서비스만 해당함.

²² 9402*: CPC 9402 중 산업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 서비스만 해당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D. 기타			
배기가스 정화 및 소음저감 서비스 (CPC 9404, 9405)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환경 시험 및 평가 서비스 (CPC 9406*, 9409*) ²³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토양 및 지하수 정화 서비스 (CPC 9406*)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환경 컨설팅 서비스 (CPC 940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²³ 9406*, 9409*: CPC 9406 및 9409 중 환경영향평가 서비스만 해당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제

4) 자연인의 주제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u>금융서비스에 대한 주해</u> 1. 금융 분야는 기본적으로 금융서비스 부속서의 카테고리에 따라 재분류됨. 그러므로 하위 분야의 순서는 GATS/SC/48/Suppl.3/Rev.1의 약속상의 하위 분야와 다름. 2. 하위 분야의 기재사항은 현존하는 국내 금융서비스에만 적용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7. <u>금융서비스</u> 두주: 모든 금융서비스는 다음 규정에 따른다. (1) 금융서비스를 공급하고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법적 형태에 대한 비차별적 제한을 조건으로 함.²⁴ (2) 한국의 약속은,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서 금융서비스 공급자를 설립하거나 이에 대한 지배지분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본국에서 동일한 금융서비스의 하위 분야에서 금융서비스의 공급에 종사하는 금융서비스 공급자를 소유하거나 지배해야 한다는 제한을 조건으로 함.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최고경영자가 한국 영역 내에 거주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한국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음. (4) 금융서비스 부속서에 따른 건전성 사유로, 한국은 모회사와 관련된 요건, 최소자본금 요건, 최소영업자금 요건, 영업 활동을 위한 영업 직원의 면허 및 승인을 포함한 조치를 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음. (5) 금융기관은 관련 법에 규정된 오직 한 종류의 사업을 위하여 설립되어야 하며, 따라서 그 밖의 관련 법에 의하여 규제되는 그 밖의 영업활동을 겸할 수 없음. (6) 한국이 자국 영역에 소재한 인, 그리고 소재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국 국민이, 어느 한 쪽 걸프협력회의 회원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로부터, 그 걸프협력회의 회원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금융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허용하더라도, 그러한 허용은 한국에 그러한 공급자에 대하여 한국 영역에서 영업을 하거나 구매권유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요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 것임. 한국은 이 의무의 목적상 “영업” 및 “구매권유”를 정의할 수 있음. 다만, 그러한 정의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에 관하여 한국이 한 약속과 불합치하지 않아야 함. (7) 한국은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에 대한 그 밖의 건전성 규제 수단을 저해함이 없이, 걸프협력회의 회원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 및 금융상품에 대하여 등록 또는 인가를 요구할 수 있음. 한국은 걸프협력회의 회원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한국의 영역에서 그 공급자가 공급해 온 금융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정보 또는 통계 목적으로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한국은 그 공급자의 경쟁상의 지위를 저해하게 될 모든 공개로부터 그러한 비밀 영업 정보를 보호할 것임.			

²⁴ 이 두주는 그 자체로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지점 또는 자회사 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거나 달리 제한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음.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8) 금융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 및 소비자 이동을 통한 공급은 원화로 결제될 수 없음. 상업적 주재의 설립 후, 금융기관은 거주자와 원화로 표시되고 결제된 거래만 다룰 수 있음. 외화로 표시되거나 결제된 거래 또는 비거주자와의 거래는 승인이 필요함. (9) 지점소유 자산은 한국의 영역 내에 보유되어야 함. 금융기관의 본점 자본금은 국내 지점의 자금 조달 및 대출 활동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인정되지 않음. (10) 요구불예금 금리가 규제됨. (11) 금융기관의 자산 관리 및 운용이 제한됨. (12) 금융기관은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음. (13) 파생상품을 포함한 새로운 금융상품의 도입은 승인을 받아야 함.			
A. <u>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u> (i) 직접보험 a) 생명보험 서비스 상해보험 및 건강보험 서비스를 포함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외국 생명보험회사에 대해서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 한국 생명보험회사와의 합작투자기업 설립은 허용되지 않음. 모집인을 포함한 보험 전문인력의 채용 및 고용이 제한됨. 각 설립체의 최고 책임자는 한국에 주재해야 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 손해보험 서비스	1) 해상수출입 적하보험 및 항공보험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외국 손해보험회사에 대해서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 한국 손해보험회사와의 합작투자기업 설립은 허용되지 않음. 모집인을 포함한 보험 전문인력의 채용 및 고용이 제한됨. 각 설립체의 최고 책임자는 한국에 주재해야 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ii) 재보험 및 재재보험 서비스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 재보험회사 및 재재보험회사에 대해서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 모집인을 포함한 보험 전문인력의 채용 및 고용이 제한됨. 한국 재보험회사 및 재재보험회사와의 합작투자기업 설립은 허용되지 않음. 각 설립체의 최고 책임자는 한국에 주재해야 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ii) 보험중개 및 대리 서비스 a) 보험 중개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외국 보험중개회사에 대해서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 각 설립체의 최고 책임자는 한국에 주재해야 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보험 대리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각 설립체의 최고 책임자는 한국에 주재해야 한다는 것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iv) 보험 부수 서비스: 하위 분야 a) 및 b)에만 적용됨. a) 손해사정 서비스 ²⁵ b) 보험계리 서비스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외국 손해사정회사 및 보험계리회사에 대해서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 각 설립체의 최고 책임자는 한국에 주재해야 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²⁵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에 관한 업무.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제

4) 자연인의 주제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 <u>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u>: 다음에 기재된 하위 분야에만 적용됨. (i) 예금²⁶ (ii) 대출²⁷ (iii) 금융 리스 (iv) 지급 및 송금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본국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영위하는 외국 금융기관(금융리스는 제외)에 대해서만 상업적 주제가 허용됨. 인은 관련 당국의 특별한 인가 없이 은행 지분의 10퍼센트까지(비금융서비스 기관의 경우 4퍼센트까지), 그리고 지방은행 지분의 15퍼센트까지 취득할 수 있음.²⁸ 인은 관련 당국의 특별한 인가 하에 은행 및 지방은행의 100퍼센트까지 취득할 수 있음. 외국환 포지션은 규제됨. 현물환매각 초과 포지션은 미화 500만 달러 또는 자본금의 3퍼센트 중 큰 금액임.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²⁶ 예금의 수취 또는 양도성 상품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발행에 의하여 은행이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인수하는 업무.

²⁷ 융자 또는 어음할인을 통하여 은행이 대중으로부터 이자를 수취하기 위하여 자금을 융자하는 업무.

²⁸ “인” 및 “비금융서비스 기관”의 정의는 「은행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름.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v) 보증 및 약정 (vi) 외환 서비스 ²⁹ (vii) 결제 및 청산 ³⁰	주택청약저축과 같이 특정 목적을 위한 예금은 지정된 기관에서만 취급 가능함. 증권저축과 신용공여의 경우 한도와 운용상의 제한에 따름. 카드론과 같은 수단을 통한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대출은 제한됨. 신용카드 서비스에 대하여, 수수료 및 이자율과 같은 각종 요율에 대한 최고한도가 있음. 양도성예금증서 만기는 30일을 초과함. 외환거래시 실수요 원칙 및 실수요 증명 요건이 적용됨. 선물거래의 경우 실수요 증명요건이 면제됨.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의무가 요구됨. 외환대출에 대한 한도 및 용도가 제한됨. 금융 리스, 신용 공여 및 증권저축회사의 최고 책임자는 한국에 주재해야 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²⁹ 외환의 발행, 송금 및 추심 업무.

³⁰ 금융결제원의 규약에 따른 은행의 어음 및 수표에 대한 결제 및 청산 업무.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viii) 거래소, 장외시장, 또는 다른 방법으로, 자기 계좌 또는 고객 계좌로 거래하는 것 다음에 기재된 상품에만 적용됨. a) 단기금융상품(수표, 어음, 양도성 예금증서 포함) b) 외환 c) 금융파생상품(선물 및 옵션 포함) d) 환율 및 이자율 상품(스왑 및 선도금리계약 포함) e) 양도성 증권 f) 그 밖의 유통증권 및 금융자산(금피 포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본국에서도 동일한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 대표사무소는 사전 통지로 설립될 수 있음. 각 설립체의 최고 책임자는 한국에 주재해야 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x) 모든 형태의 증권발행에 참여 a) 증권발행 b) 증권인수 c) 증권모집 d) 그 밖의 증권 관련 서비스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모든 종류의 증권을 발행하는 외국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 대표사무소는 사전 통지로 설립될 수 있음. 각 설립체의 최고 책임자는 한국에 주재해야 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x) 자산 운용: 다음에 기재된 서비스에만 적용됨. a) 현금 또는 포트폴리오 운용 b) 모든 형태의 집합투자 운용 c) 보관 d) 신탁 ³¹ (투자일임업 포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외국 자산운용회사에 대해서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 대표사무소는 사전 통지로 설립될 수 있음. 신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본업인 은행업 외의 업무에 종사하고 신탁업에 종사한다는 금융위원회의 승인(두 종류)이 요구됨. 부동산 신탁 사업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각 설립체의 최고 책임자는 한국에 주재해야 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³¹ 수탁자가 위탁을 받아 신탁자의 이익을 위하여 금융자산을 운용하는 업무.

4) 자연인의 주재

[illegible]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9. <u>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u>			
A. <u>호텔 및 레스토랑</u> (CPC 641, 642, 6431*) CPC 6431 중 철도 및 항공 운송 관련 시설은 제외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u>여행 알선 및 대행 서비스</u> 여행 알선 서비스 및 여행 대행 서비스 (CPC 747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u>관광객 안내 서비스</u> (CPC 747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10. <u>레크리에이션, 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u> A. <u>엔터테인먼트 서비스</u> (CPC 96191, 96192) 뮤지컬, 연극, 라이브 밴드, 오페라 등과 같이 개인 아티스트나 그룹에 의하여 제공되는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1. <u>운송 서비스</u> A. <u>해상운송 서비스</u>³² 국제 운송 (CPC 7211*, 7212*) 연안운송은 제외함	1) a) 정기선 해운: 제한 없음. b) 벌크선, 부정기선 및 그 밖의 국제해운: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항구에서의 다음 서비스는 국제해상운송공급자에게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함.

³² 해상운송 서비스에 관한 첨부 참조.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3) a) 한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을 운영할 목적으로 등록된 회사의 설립 i) 국제여객해운: 약속 안함. ii) 국제화물해운: 「상법」 상에 명시된 주식회사만이 허용됨. b) 그 밖의 형태의 상업적 주재: 제한 없음. 4) a) 선박승무원: 약속 안함. b) 항만 노무자: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3) a) 제한 없음. b) 제한 없음. 4) a) 약속 안함. b)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도선 2. 예선 지원 3. 식량·연료 공급 및 급수 4. 쓰레기 수거 및 밸러스트 폐기물 처리 5. 선석 배정 서비스 6. 항행원조 7. 통신, 급수 및 전기공급을 포함한 선박 운영에 필수적인 육상 기반 운영 서비스 8. 비상보수시설 9. 정박, 접안지 및 선박 접안 서비스
※ 주석 관련 국내법상 연안운송으로 간주될 수 있는 활동 범위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이 양허표는 한반도 전체 및(또는) 그 부속도서에 위치한 항구 또는 지점과 한반도 전체 및(또는) 그 부속도서에 위치한 다른 항구 또는 지점 간의 여객 또는 화물운송에 적용되는 것으로 의제되는 국내 연안운송을 포함하지 않음. 한반도 전체 및(또는) 그 부속도서에 위치한 항구 또는 지점에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규정된 대륙붕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 및(또는) 그 부속도서상의 항구 또는 지점이 포함되고,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도서에 위치한 동일한 항구 또는 지점에서 시작하여 종료하는 운송도 국내 연안운송에 포함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u>해운 부수 서비스</u> 해상화물취급 서비스 (CPC 741*) 항만 내 창고업 (CPC 742*) 통관 서비스 해운대리업 서비스 (CPC 748*) ³³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³³ CPC 748 중 해상여객운송사업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외국운송사업 포함)을 주선하는 대리업 서비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컨테이너 스테이션 서비스 (CPC 741*) ³⁴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해상화물운송주선 서비스 (CPC 748*) ³⁵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상법」 상에 명시된 모든 회사가 허용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해운중개 서비스 (CPC 748*, 749*) ³⁶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상법」 상에 명시된 모든 회사가 허용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선박 유지 및 보수 ³⁷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상법」 상에 명시된 모든 회사가 허용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³⁴ CPC 741 중 항만 지역에서 제공되는 컨테이너 스테이션 서비스.

³⁵ CPC 748 중 자기의 명의(계약상 외국주선인 포함)로 선박에 의한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서비스.

³⁶ 748*, 749*: CPC 748 및 749 중 해상화물운송 중개 서비스 또는 선박의 용대선, 대여 또는 매매를 위한 중개 서비스.

³⁷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또는 선박대여업을 위하여 제공되는 선박 수리 및 관리, 선원 관리 및 해상보험과 같은 서비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선원 포함 선박 임대 (CPC 721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예선 서비스 (CPC 7214)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검수, 검량 및 감정 서비스 (CPC 745*)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C. <u>항공 운송 서비스</u> ³⁸			
컴퓨터 예약 시스템(CRS) 서비스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항공 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항공기 유지 및 보수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³⁸ 항공운송서비스에 관한 GATS 부속서의 정의에 따름.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E. 철도 운송 서비스 a. 여객 운송 (CPC 7111) b. 화물 운송 (CPC 7112)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현재 운영 중인 노선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새로운 노선의 설립은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함. 주요 기준: 철도 산업에서의 질서와 규율의 확립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철도 운송 부수 서비스 (CPC 741의 일부, CPC 7113의 일부) ³⁹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³⁹ 철도운송 부수 서비스에 대한 약속은 민간 소유 철도 시설에만 적용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F. <u>도로 운송 서비스</u> 연안운송을 제외한 컨테이너 화물 운송 (CPC 71233*)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허가는 국제해운회사에만 부여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화물은 수출 또는 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로 한정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G. <u>파이프라인 운송</u> (CPC 7131*) 석유제품 운송에만 한정, 다만 LPG 운송은 제외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H. <u>모든 운송형태에 대한 부수 서비스</u> b. 항만구역 외의 창고업(CPC 742*) 농산물, 수산물 및 축산물에 대한 서비스는 제외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 <u>그 밖의 운송 서비스</u> 복합 운송 서비스 철도 화물 주선 ⁴⁰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⁴⁰ “철도 화물 주선”이란 철로 운송의 끝지점에서 수행되는 컨테이너 화물의 수집, 한국철도공사와의 철도화물 운송을 위한 계약의 체결, 화물 하역 및 배달과 같은 부수 서비스를 말함.

해상운송 서비스에 관한 첨부

1. 국제해운, 3.b)

“국제해상운송 서비스 공급을 위한 그 밖의 형태의 상업적 주재”란 다른 쪽 당사국의 국제해상운송 서비스 공급자가 그들의 고객에게 해상운송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점을 설치하고 이와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2. 해상화물취급 서비스

터미널 운영자를 포함한 하역회사가 수행하는 활동으로서, 항만인력단이 하역회사 또는 터미널 운영회사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직된 경우 항만노무자의 직접적 활동은 포함하지 않는다. 적용대상이 되는 활동은 다음의 조직 및 관리를 포함한다.

- 선박으로의/선박으로부터의 화물 선적/하역
- 화물의 고정/분리
- 선적 전 또는 하역 후 화물의 인수/인도 및 보호

3. 통관 서비스

이 서비스가 서비스 공급자의 주요 활동 또는 주요 활동의 일상적인 보조 활동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입, 수출 또는 화물의 통운송과 관련하여 다른 자의 통관절차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구성된 활동

4. 컨테이너 스테이션 및 창고 서비스

컨테이너의 적입/적출, 수리 및 선적에 이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항만 지역 내에 보관하는 것으로 구성된 활동

5. 해운대리업 서비스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대리인으로서 일정한 지역 내에서 하나 이상의 해운선사 또는 해운회사의 영업상 이익을 대표하는 것으로 구성된 활동

- 견적부터 송장 작성까지 해상운송 및 관련 서비스의 마케팅 및 판매, 회사를 대신한 선하증권의 발행, 필요한 관련 서비스 취득 및 재

- 판매, 서류 준비, 그리고 사업정보의 제공
- 필요한 때, 선박 기항을 편성하거나 화물을 접수하는 회사를 대신한 업무 수행

6. 해상화물운송주선 서비스

해상운송 및 관련 서비스의 취득, 선적서류 준비 및 사업정보 제공을 통하여, 선적자를 대신하여 선적업무를 조직 및 점검하는 활동

7. 검수·검량·감정 서비스

- 검수 서비스: 화물을 선적 및 양하하는 경우 그 화물의 개수를 계산하거나 인도 및 인수를 증명하는 것으로 구성된 활동
- 검량 서비스: 화물을 선적 및 양하하는 경우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는 것으로 구성된 활동
- 감정 서비스: 선적화물 및 선박(부선 포함)과 관련된 검증, 검사 및 조사로 구성된 활동